

# 2021년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9. 14.(화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2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홍지만(분과위원장), 김민아, 임형주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3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 II. 회의내용 및 결과

###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788건(안건번호 제2021-123190호~12397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23190호~1231945는 웹하드, ■■■■ 카페 및 블로그에 만화, 영상 불법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이 중 안건번호 제2021-123195호는 심의 대상 게시물이 삭제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며 나머지 5개 안건은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바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123567호는 웹하드에 영상 복제물을 게시한 사안임. 국내에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한 외국 영상저작물을 게시한 사안으로, 외국 저작물의 보호기간 또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34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Ⅲ. 회의 의사록

#### 1. 개회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 2. 전차(제2021-234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홍지만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E 위원: 민원인이 신고한 내용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식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부분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E 위원: 안전번호 제2021-123195호는 현재 삭제가 되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해야 하며 나머지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동의함.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3190호~123195호 중 제2021-123195호는 삭제 되어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안전번호 제2021-123567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발견한 영상 불법복제물로 웹하드에 영화 '◆◆◆◆◆◆◆◆'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 저작물은 국내에서는 2011. 6. 30.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저작권보호기간인 50년이 적용되어 2012년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음.

(보호원이 제출한 채증 자료 중 게시 화면을 보여주면서)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

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은 조사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오진해 전문위원: 조사대상을 정할 때 박스오피스 순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때 재개봉 등으로 공유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음. 심의에서 발견되어 보호기간 만료로 확인되는 경우 향후 모니터링에서는 제외해달라고 담당 부서에 요청을 드리고 있음.
- E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국내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해당 저작물을 복제·전송한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음.
- B 위원 : 동의함. 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3567호는 외국저작물의 보호기간 또한 국내법에 의하여 정해지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1-123196호~123977호는 모두 불법 복제한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 출판, 만화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중점](영화)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2021)'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23325호 '[중점](영화)기동전사 건담: 섬광의 하사웨이 (2021)'는 2021. 6. 11. 개봉한 해외 영화로 모바일 웹하드서 345포인트에 배포중임.

(영화 '(영화)귀여운 여인 (1990)'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23568호 '(영화)귀여운 여인 (1990)'는 1990. 9. 15. 개봉한 해외 영화로 웹하드에서 1,670포인트에 판매중임.

(방송 '[중점](방송)종이의 집(2017)'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1-123728호 '[중점](방송)종이의 집(2017)'은 2017. 5. 2. ~ 2017. 6. 17 방영한 해외드라마로 웹하드에서 490포인트에 판매중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위 3건을 포함한 1,349건에 대해 시정권고 가결 의견임.

- 홍지만 분과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심의안건 목록을 확인하시어 안건번호 제2021-123196호~123977호에 대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B, E 위원: (심의안건 목록과 보호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함)모두 불법 복제한 저작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홍지만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1-123196호~123977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1-123190호~123194호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23195호는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고 안전번호 제2021-123567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1-123196호~12397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 4. 폐회 선언

- 홍지만 분과위원장이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42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9. 28.

분과위원장 홍지만

위원 김민아

위원 임형주